

제 3 장 운 영

제1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 정원

시설의 이용정원은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 24 명으로 한다.

2. 입소 대상

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 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②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나. 제2항 가목 1호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라. 제2항 가목 2호 및 3호의 이용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이용신청서
- ② 관련증빙자료 각 1부

마. 제1항 가목 1호의 일반이용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다.

- ① 건강진단서 1부(감염병검사포함)
- ② 주민등록등본 1부(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입소자 및 보호자 별도)
-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1부.

바. 제1항 가목 2호, 3호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입소이용 의뢰서가 시설에 통지되면 시설장은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토록 조치한다.

3. 입소자의 모집

입소자 모집은 인터넷, 홍보지, 플랜카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방문상담, 전화, 입소, 상담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입소자를 모집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갑”과 서비스이용자“을”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 【이용료 및 비용변경】

-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 다.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입소자 서비스의 항목과 절차】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과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예방에 힘쓴다.
3.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설 이용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확인을 하여 신체 변화를 관찰 기록하고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6. 시설 이용자에게 인지, 여가 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자 상태 변화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진료 약제비에 대하여는 관리 계좌를 분리하여야 하며 비급여 품목 비용에 대하여는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하고 이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별표 5- 제12조 관련 】 시설 입소자 월 요양급여비 내역

■ 입소자 월 요양급여비 내용 (년간 계산에 의한 월 균등액)

단위:원

등급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41,820	6,273
	2등급	38,720	5,808
	3등급	35,740	5,361
	4등급	34,120	5,118
	5등급	32,490	4,874
	인지지원등급	32,490	4,874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6,060	8,409
	2등급	51,930	7,790
	3등급	47,940	7,191
	4등급	46,300	6,945
	5등급	44,650	6,698
	인지지원등급	44,650	6,698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9,730	10,460
	2등급	64,590	9,689
	3등급	59,640	8,946
	4등급	58,010	8,702
	5등급	56,360	8,454
	인지지원등급	56,360	8,45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6,820	11,523
	2등급	71,160	10,674
	3등급	65,750	9,863
	4등급	64,090	9,614
	5등급	62,460	9,369
	인지지원등급	62,460	8,454

■ 비급여 항목 비용

항목	내 용	금액	비고
식 재료비	1일 2,500원 x 2식	1일 5,000원	점심,저녁(아침별도)
간식비	1일 1,000원	1일 1,000원	
진료,약제비	외래 진료 및 약제비 비급여액	보호자 부담	
이 미용	이미용료	보호자 부담	
요청 물품	보호자, 또는 요청에 의한 물품	보호자 부담	